

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2. 9.(화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이병기 위 원
형태근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「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」 운영 및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(2010-06-020)

- 석제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」의 2기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는데 동의하고, 同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위원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할 것을 의결함

<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 >

구 분	성 명	성 별	현 직	비 고
위원장	형태근	남	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	연임
방송	김봉현	남	동국대 언론정보학과 교수	연임
통신	홍대형	남	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	연임
	고상원	남	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실장	신규
법률	조성국	남	중앙대 법과대학 교수	연임
	고학수	남	서울대 법과대학 교수	신규
	이성엽	남	김&장 법률사무소 변호사	연임
	이영삼	남	법무법인 세종 변호사	연임
경제·경영	이동기	남	서울대 경영대학 교수	신규
	홍철규	남	중앙대 경영대학 교수	연임

2) WiBro 사업자의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건 (2010-06-021)

-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위원회의 시정명령('09. 10월)에 따라 WiBro 사업자인 KT와 SKT가 제출한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 이행계획을 승인키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KT 주요 이행계획

- KT는 2011. 3월까지 84개 도시에 면적기준 24.3%(당초 사업계획 42.2%), 인구 기준 83.0%(당초 사업계획 77.7%)를 커버하도록 망을 구축할 계획
- KT는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으나 서울 ~ 대전간 경부 및 중부 고속도로에 끊임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망을 구축할 계획
- '08년 말까지 6,882억원을 투자하였으며, '09 ~ '11년 3월까지 3,549억원을 투자하여 총 1조431억원(당초 사업계획상의 투자금액과 동일)을 투자

② SKT 주요 이행계획

- SKT는 2010. 12월까지 84개시에 면적기준 9.1%(당초 사업계획 5.12%), 인구기준으로 67.8%(당초 사업계획 66.88%)를 커버할 계획
- SKT는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서울 ~ 대전간 경부고속도로에 끊임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망을 구축할 계획
- '08년말까지 5,329억원을 투자하였으며, '09년 ~ '11년 5월까지 2,921억원을 투자하여, 총 8,250억원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100억원을 추가 투자

3) 「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」에 관한 건 (2010-06-022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OBS의 역외재송신을 승인받은 서울지역 13개 SO에 대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('10. 2. 18)되고, 추가로 위성방송사업자 등의 재송신 수요가 제기됨에 따라, 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 건을 의결함

※ 당초 안건명인 "「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 정책방향」에 관한 건"이 "「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」에 관한 건"으로 수정됨

○ 주요 내용

- 기존에 OBS 역외재송신을 승인받은 13개 SO에 대해서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별도 심사절차 없이 3년간('10. 2. 19 ~ '13. 2. 18) 연장하되,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매년 시장상황을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함
- 또한, 추가로 OBS 재송신 수요가 제기된 위성방송사업자인 SkyLife와 tu미디어의 재송신 건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을 받아 심사하기로 의결함

4) 2010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(2010-06-023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'10. 9. 9과 '11. 2. 17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(주)에이치씨엔 등 2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재허가 대상 사업자 (총 25개사)

- '10. 9. 9 허가만료 사업자 : 23개사
- '11. 2. 17 허가만료 사업자 : 2개사

< MSO별 재허가 대상 사업자수 >

SO명	티브로드	CMB	CJ	씨앤엠	HCN	개별	합계
사업자수	9	6	2	2	1	5	25

② 재허가 심사계획

- 심사위원회 구성

-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- 방송위 상임위원(심사위원장)을 포함하여 평가항목별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
-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

- 재허가 여부 결정

- 재허가 심사 결과, 650점 이상인 경우는 '재허가'하되, 특정항목에서 40%에 미달할 경우에는 조건 부과 가능
- 650점 미만인 경우에는 '재허가 거부'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'조건부 재허가' 의결

<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>

심사항목 및 평가내용	배 점	평가지표 성격	비고
1.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	500	계량	07년과 08년의 평균점수
2. 방송의 공적 책임·공공성·공익성의 실현가능성	100	비계량	평가기준 및 심사평가 기본원칙에 따라 배점 (5점 척도)
3.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	100	비계량	
4.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	100	비계량	
5.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	50	비계량	
6. 재정 능력	50	비계량	
7. 기술적 능력	50	비계량	
8.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	50	비계량	
9.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	감점처리	계량	
합 계	1,000		

사. 보고사항

1)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·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
○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방송법 제35조의4(미디어다양성위원회)에 따라 마련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·운영 계획을 보고받음

○ 주요 내용

① 위원 구성

- 위원은 신문방송, 통계, 법률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학계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

※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양성위원회 위원 중 지명 (시행령 제21조의5)

※ 위원 임기는 2년, 1회에 한해 연임 가능

② 분과 위원회 구성·운영

-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, (가칭)시청률 조사·시청점유율 산정·영향력지수 개발 등에 대해 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

2) 「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보고받음

○ 주요 내용

①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(안 제3조), 자격(안 제4조), 직무(안 제5조)는 방송법 (제35조의4) 및 시행령(제21조의4와 5) 규정을 준용

②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(안 제7조)

-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

- 임시회의는 방통위 위원장 또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

③ 의결(안 제7조제4항)

- 법정 위원회 등의 운영 사례에 따라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긴급한 사항 또는 정상적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의결 조항 포함

④ 분과위원회(안 제11조)

- 시청점유율 조사, 시청점유율 산정,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의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
-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
- 분과위원회 위원은 방통위 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내·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되, 외부 전문가의 경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
-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 가능
-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

3) (주)CJ오쇼핑의 (주)온미디어 인수에 따른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

- o CJ오쇼핑이 (주)온미디어 계열 SO 및 PP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를 해움에 따라,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심사계획을 보고받음

o 주요 내용

① 전문가 심사단 구성

- 회계사 2인, 변호사 2인, 방송 및 공정경쟁 분야 각 1인 등 6인

② 주요 심사 및 검토 사항

- **(SO)** 방송의 공적 책임·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,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, 시청자의 권익 보호,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
- **(PP)** 매출액 및 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, 매출액 제한 중심 독·과점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'10. 2. 12.(금) 10:00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2:05)

- ※ 11:35 정회, 11:45 속개